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56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송재봉 · 김문수 · 황명선

박정 · 이주희 · 박정현

남인순 · 김기표 · 윤종군

박지혜 · 이용선 · 최혁진

김남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차전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가 가지는 국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부재하고,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납부 할 세액이 적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납부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한편, 환급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

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이 이차전지 완제품, 부품, 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생산(최종 생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생산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품을 생산한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량 및 생산비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량 및

생산비용의 산정,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4조의2(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① 이차전지 완제품, 부품, 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24조에 따라 공제받을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범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3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3(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자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144조의4(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하여 제

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5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5(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4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자체 없이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 제144조의4 및 제14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0절의6 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u></p>
<u><신 설></u>	<p><u>제100조의35(이차전지산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u></p> <p><u>① 내국인이 이차전지 완제품, 부품, 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2035년 12월 31일 까지 생산(최종 생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생산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품을 생산한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u></p> <p><u>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u></p>

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

조에 따라 공제받을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
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범
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
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하 이 조 및 제144조의3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
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
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144조의3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
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
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

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3(이차전지산업 투자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2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신 설>

환급에 관한 권리의 양도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
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
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44조의4(이차전지산업 국내생
산에 대한 환급 특례) ① 2035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 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
에 대하여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
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한도액
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
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5에서 “미공제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

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내국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의5(이차전지산업 국내생산에 대한 미공제금액 환급 권리의 양도 특례) ① 제144조의 4에 따른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의 환급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